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136
----------	------

2021년 03월 05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김소양 의원 외 15명
- 나. 제안일 : 2021년 02월 04일
- 다. 회부일 : 2021년 02월 09일
- 라. 상정일 : 제29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2월 26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소양 의원)

가. 제안이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책무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도 추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1.5.)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 경우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위해 특별히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2021. 2. 16. ~ 2. 23.)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1.1.5)사항¹⁾을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책무 주체로써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안 제3조제1항),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배려와 지원을 하도록 시장의 책무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 동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인바, 법령 및 조례와의 체계성 측면에서 부합한다고 하겠음.

현행	개정안
<p>제3조(시장 등의 책무) <u>서울특별시</u>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가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u>서울특별시</u>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또한, 동 개정안은 탈북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책무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능동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특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한 지원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 개정이전 법령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책무 주체가 중앙정부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체계에서 사실상 소외되어 있는 상황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지원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사실상 기관위임에 불과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수 : 6,987명('21.1.1 기준)] (단위 : 명)

구 분	'21.1.1	'20.1.1	'19.1.1	'18.1.1	'17.1.1
서울시	6,987	7,092	7,020	6,966	6,905
비율(%)	22.2	22.8	23.4	24	24.7
전 국	31,513	31,003	29,950	29,061	27,847

※ 서울시가 전국 31,513명의 22.2%로 경기도 33.7%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거주하며 서울거주 비율은 매년 감소추세임.

연번	시도명	계	남	여	비율
	계	31,003	8,062	23,451	100.0%
1	경기	10,615	2,682	7,933	33.7%
2	서울	6,987	2,179	4,808	22.2%

3	인천	2,989	781	2,208	9.5%
4	충남	1,621	342	1,279	5.0%
5	충북	1,645	259	1,086	4.3%
6	경북	1,093	219	874	3.5%
7	경남	1,081	246	835	3.4%
8	부산	982	256	726	3.1%
9	강원	860	219	641	2.7%
10	대구	663	140	523	2.1%
11	대전	599	131	468	1.9%
12	전남	649	159	490	2.1%
13	광주	588	132	456	1.9%
14	전북	534	117	417	1.7%
15	울산	500	125	375	1.6%
16	제주	313	67	246	1.0%
17	세종특별자치시	94	8	86	0.3%

- 다만, 상위 법령(「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는 원칙적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보호기간 5년 동안 우리 사회에 적응·정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보호 및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과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 규모와 지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도]

보호 요청 및 국내이송 (해외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 요청 시 외교부, 관계부처에 상황보고 및 전파 • 해외공관 또는 주재국 임시보호시설 수용 • 신원확인 후 주재국과 입국교섭 및 국내 입국 지원
-----------------------------------	--

국내 입국

합동신문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후 국정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신문 • 조사종료 후 사회적응교육시설인 하나원으로 신병 이관
------------------------------	---

보호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 결정 • 세대단위 보호결정
-------------	---

하나원 정착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응교육 (12주, 392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안정, 우리사회 이해 증진, 진로지도 상담, 기초 직업훈련 • 초기정착지원 : 가족관계 창설, 주거알선, 정착금·장려금지원 등
---------------------	--

거주지 전입

거주지 보호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안전망 편입 (생계·의료급여 지급) • 취업지원 : 고용지원금, 무료 직업훈련, 자격인정 등 • 교육지원 : 특례 편입학 및 등록금 지원 • 보호담당관 : 거주지·취업·신변보호 담당관 제도 운영
-----------------------	---

민간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하나재단을 통한 종합서비스 제공 • 지역적응센터 지정·운영 ※ 서울 4개 센터 (동, 서, 남, 북) • 정착도우미제도 : 민간자원봉사자 연계 등 •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상담 및 애로사항 해결 등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
-------------	---

- 특히, 현행 조례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6,987명)을 대상으로 생활기반 지원 등 4개 분야에 걸쳐 자립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조례 개정에 따른 새로운 시책 마련의 필요성 여부,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행정국의 세밀한 계획수립 등 조례 시행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1년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련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1년 예산액	비 고
총 계	1,983,460	
소 계	539,960	시비
▶서울시민 길라잡이 행사, 서울생활 안내서 제작 등	23,560	
▶기초생활 물품지원	151,200	
▶치과 치료	313,672	
▶건강증진사업 (대사증후군 검사, 마음돌봄 등)	51,528	
소 계	1,443,500	국비
▶지역적응센터(4개) 운영	1,329,000	
▶지역협의회 운영	114,500	

- 끝으로, 안 부칙에서 시행일(2021.7.6)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법률과의 부합성측면과 정책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걱정하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소양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136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2월 04일
발 의 자 : 김소양, 김소영, 김용석,
김재형, 김진수, 김화숙,
봉양순, 성중기, 여 명,
이석주, 이성배, 임종국,
전병주, 채유미, 최정순,
한기영 의원(16명)

1. 제안이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책무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도 추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1.5.)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 경우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위해 특별히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시장 등의 책무) <u>서울특별시</u>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가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u>서울특별시</u>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문서번호	2021020100000026
------	------------------

미첨부 사유서 (2호)

요청인 : 김소양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백소영 주무관
접수일 : 2021. 02. 01.	내용문의 : 02-2180-7954
회신일 : 2021. 02. 02.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시장 등의 책무) 제1항을 개정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시장의 책무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내용이므로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1항제2호)

-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지원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주 무 관 백소영

☎ 02-2180-7954

e-mail : thdud36@seoul.go.kr